

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3. 10. 12.>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(제10조의2제1항 관련)

1. 입지조건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한다.

2. 시설 유형별 규모

시설 유형	입소정원	시설의 최소면적
가. 출산지원시설		
1)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	30명 이상 70명 이하	20.79제곱미터×정원(명)
	10명 이상 30명 미만	13.21제곱미터×정원(명)
2)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	5명 이상 30명 이하	20.79제곱미터×정원(명)
나. 양육지원시설	5세대 이상 30세대 이하	20.79제곱미터×정원(세대)
다. 생활지원시설	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	1) 2007년 3월 29일 전 설치된 시설 44제곱미터×정원(세대) 2) 2007년 3월 29일 이후 설치된 시설 56.1제곱미터×정원(세대)
라. 일시지원시설	10명 이상 70명 이하	9.9제곱미터×정원(명)
마.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	-	82제곱미터. 다만,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에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4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

3.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

가. 일반기준

- 1)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.
- 2)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 - 가) 공통시설: 생활실, 사무실(입소정원 20세대 이하 또는 30명 미만의 시설은 상담실과 겸용할 수 있다), 상담실, 도서실, 화장실(목욕실과 겸용할 수 있다), 목욕실,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, 비상재해대비시설, 경비실, 창고. 다만, 도서실, 목욕실 및 경비실은 입소정원 20세대 이상 또는 30명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.
 - 나)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
 - (1) 출산지원시설: 식당 및 조리실, 프로그램실, 의무실, 산후회복실. 이 경우 입소정원 30명 미만의 시설은 의무실을 산후회복실과 겸용할 수 있다.
 - (2) 양육지원시설: 프로그램실
 - (3) 일시지원시설: 식당 및 조리실. 다만,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- 3) 제2호마목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사무실(상담실과 겸용할 수 없다), 상담실, 프로그램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프로그램실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설비기준

- 1) 생활실
 - 가) 난방시설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,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 - 나)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.
 - 다) 출산지원시설의 생활실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하고,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각 생활실 정원 1명당 6.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
 - 라) 양육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주방을 갖추어야 하고,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13.2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 - 마) 생활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주방을 갖추어야 하고,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다음과

같다.

(1) 2007년 3월 29일 전 설치된 시설: 세대당 27.65제곱미터 이상

(2) 2007년 3월 29일 이후 설치된 시설: 세대당 42.9제곱미터 이상

바) 일시지원시설의 생활실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하고,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각 생활실 정원 1명당 6.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2) 사무실

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상담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별도의 상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

3) 상담실

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4) 도서실

도서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책상·의자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이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신문·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해야 한다.

5) 화장실

수세식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. 이 경우 화장실을 목욕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.

6) 목욕실

샤워설비 및 세면설비 등 목욕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7)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

가)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이용한다. 다만,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)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, 폐기물처리시설,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.

다) 빗물·오수(汚水)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8) 비상재해대비시설

가)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, 잠금장치를 문 안쪽

에 설치해야 한다.

나) 건물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하고,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,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다)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다.

라)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도시가스사업법」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.

9) 경비실

시설의 경비에 필요한 적절한 경비실을 갖추어야 한다.

10) 창고

물품 보관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
11) 식당 및 조리실

가) 식탁·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나) 조리실은 채광(採光)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,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.

다)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12) 프로그램실

입소자의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해야 한다.

13) 의무실

진찰, 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14) 산후회복실

분만 후 산모의 회복과 산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